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403
----------	-----

2024. 3. 2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6. / 남양주시장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청소년시설 위탁 해지 시 수탁자에게 광범위한 손실 보상 제한규정을 공유재산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정비하여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시설 위탁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정비(안 제8조)
- 다산동, 오남읍 지역에 청소년시설 설치 신설(안 별표 1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봉규)

- 본 개정안은 신설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수탁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,

- 올해 6월, 다산동과 오남읍에 개관 예정인 펀그라운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시설 위탁 해지 시 손실 보상 제한 규정을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,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